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7034호)

2026. 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3
2. 농장 종업원 및 시설출입차량 운전자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 관리 강화	7
3. 계열화사업자 이동제한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 법적 근거 명확 화	10
4. 손해배상 청구권 부여 및 점검 거부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15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6. 2. 25.
3. 회 부 일 : 2026.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내용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종업원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가 가축사육시설을 방문할 경우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명령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방역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Ⅲ. 검토의견

1.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안 제3조의2제1항)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의 범위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자 및 장소, 역학조사 내용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u>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 ----- ----- -- <u>다음 각 호의</u> ----- ----. <u>1. 가축전염병의 종류</u> <u>2.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자 및 장소</u> <u>3.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내용</u> <u>4.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u>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u>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 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 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u> <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u> ③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장 관련 가축전염병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공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함으로써 방역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 공개되는 있는 정보와 개정안에 따른 정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개정안과 현행 시행령의 정보공개 항목 비교 】

개 정 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2
1. 가축전염병의 종류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자 및 장소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및 농장 소재지(읍·면·동·리까지로 하며, 번지는 제외한다)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3.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내용	-
4.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u>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u>	2의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u>해당 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u>
-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구체적으로 항목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이 현행 시행령과 유사하나 개정안의 경우 제13조1)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가 추가되었음.

현재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법률 수준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에서 명확히 제도화하여 정보공개의 예측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사료됨.

한편, 가금 및 돼지 농가 등은 축산 계열화율²⁾이 매우 높고, 계열화사업의 특성상 사료 차량이나 축산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우려가 매우 큼³⁾

따라서 전염병의 전파 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현행 시행령은 공개 대상을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계약 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먼저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관련된’ 사업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 또한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관련된’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열화사업자에

2) 닭 계열화율 94.6%('24년), 오리 97.6%('24년), 돼지 33.6%('23년)

3) '21/'22년 고병원성 AI 발생 47건 중 30건(63.8%), '22/'23년 75건 중 43건(57.3%)이 계열사 운영 가금 농가에서 발생

관하여 공개되는 정보를 구체화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농장 종업원 및 시설출입차량 운전자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 관리 강화(안 제17조의6 등)

개정안은 농장주에게 소속 종업원이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생략) <u><신설></u>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u> <u>③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는 가축사육시</u>
<u><신설></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1. ~ 5. (생략)

<신설>

5의2. ~ 5의9. (생략)

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

설을 방문할 경우 사람 및 차량 등의 방역조치 방법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 -----

--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3항-----
-----.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의3. ~ 5의10. (현행 제5호의2부터 제5호의9까지와 같음)

5의11. 제17조의6제1항 또는 제3항-----

니한 자 <u>5의11.</u> (생 략) 6. (생 략) ③ · ④ (생 략)	----- <u>5의12.</u> (현행 제5호의11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는 주요 원인은 사람, 차량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됨.⁴⁾

이에 해당 개정안은 방역 의무 준수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인 인적·물적 요인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 방역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가축사육시설을 방문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기준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요구되거나 금지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이를 모두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운전자가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과태료 부과 핵심적인 구성요건을 사실상 시행

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2~'23년도 총 67건 중 바이러스 유입원인: 사람 14건, 차량 53건
(아프리카돼지열병) '22~'23년도 총 7건 중 바이러스 유입원인: 사람 7건(차량 4건 중복)
(구제역) '23년도 총 11건 중 바이러스 유입원인: 사람 4건, 차량 3건

규칙에서 전적으로 정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므로,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⁵⁾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계열화사업자 이동제한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을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을 경우 이동제한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 ----- ----- ----- -----

5) 현행법 제17조의6제1항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② ~ ⑨ (생략)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

----- . ----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

1. ~ 6. (현행과 같음)

7.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 대하여 사람, 가축, 오염우려물품과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

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 한다),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설출입차량, 종사자,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 ----- ----- -----.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 호부터 <u>제5호까지</u> , 같은 조 제 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 ----- ---- <u>제5호까지</u> 및 <u>제7호</u>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이동제한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대한 대상자는 주로 ‘소유자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거대한 생산망을 관리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처분의 근거로는 불충분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전염병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자등을 신속히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가금 및 양돈 산업의 경우 계열화사업자를 중심으로 생산·출하 등의 운영구조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사람·차량·물품 등의 이동이 이러한 운영망을 따라 전파·확산 위험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열화사업자의 운영망을 관리 대상으로 포섭하는 개정안은 가축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입법조치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의 이동제한 및 일시 이동 중지 조치가 방역지역, 시·군 또는 시·도 등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계열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계약사육 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을 중심으로 보다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통제를 실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4. 손해배상 청구권 부여 및 점검 거부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48조의4 신설 등)

개정안은 고의로 중대한 방역위반을 한 경우 국가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이 소독설비·방역시설 점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4(손해배상청구권)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가축 살처분 비용, 가축의 사체 매몰·소각·화학적 처리 등의 비용, 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u>
제60조(과태료) ① (생략)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② -----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1. ~ 5. (생략) <u><신설></u> <u>5의2. ~ 5의9.</u> (생략) <u>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u> <u>5의11.</u> (생략) 6. (생략) ③·④ (생략)	-----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u>5의3. ~ 5의10.</u> (현행 제5호의2부터 제5호의9까지와 같음) <u>5의11. 제17조의6제1항 또는 제3항</u>----- ----- <u>5의12.</u> (현행 제5호의11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이동제한명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위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살처분 보상금 등 막대한 방역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전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부재⁶⁾한 상황임.

6)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철원군)가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양돈농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의 목적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있을 뿐, 이를 지자체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지자체의 살처분 보상

이에 개정안은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투입된 막대한 국가재정을, 손해의 책임이 있는 위반자에게 환수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축산 관계자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함.

유사한 입법례로 2021년, 코로나19 확산 대응 과정에서 방역 지침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에게 환수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제72조의2)⁷⁾을 신설한 바 있음.

다만, 개정안은 제11조, 제15조, 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법 적용 시에는 행정청이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질 우려가 있음.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설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 유사 입법례⁸⁾와의 법체계적 정합성 및 형평성, 그리고 규제 대상인 축

금 지급은 법령에 규정된 행정적 의무일 뿐 양돈농가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8)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설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①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민법, 상표법, 부정

산농가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현행법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확인 및 점검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실효적인 수단이 미비하여 방역 현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거부·방해·기피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방역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425

경쟁방지법)으로 하는 방식, ②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 방식(감염병 예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본법) ③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참고1

축산계열화사업 개요⁹⁾

- **(정의)**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 받는 사업(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계열화사업의 유형)** 현행법상에는 계열화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계열화사업을 운영
 - ① **(자재의 매입매출 형태)** 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선 판매(외상) 후 가축 출하시 자재비 공제 후 농가에 차액지불 형태
 - ② **(가축의 위탁사육 형태)** 계열화사업자 소유의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제공하고, 출하 후 사육수수료를 농가에 지불하는 형태
 - * 가축의 소유권은 계열화사업자가 확보, 닭은 중소규모 업체 오리는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운영
 - ③ **(협동조합형(양돈))** 계열화사업자가 가축(모돈) 등 사육자재를 농가에 판매하고, 농가는 그 가축에서 생산된 가축(자돈)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 재 판매하는 형태(농가가 가축소유권)
- **(계열화사업 등록 현황)** 닭·오리산업은 짧은 사육주기(육계 32일, 오리 45일) 등으로 대부분 계열화사업 형태로 운영
 - 현황('24년 조사기준) : 닭 94.6%(등록 73개소), 오리 97.6%(등록 16개소)
 - * '닭 73개소(등록) 중 57개소 영업 중, 오리 16개소(등록) 중 16개소 영업 중

< 기타 참고사항 >

-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제* 시행**(20.1.15 시행)에 따라 요건(법인, 고정사업장)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므로 법인 형태가 아닌 자는 계열화사업을 등록할 수 없음
 - * 등록대상 가축(4종): 돼지, 닭, 오리, 염소
 - ** **미등록** 계열화사업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미등록영업 금지)
- 다만, 개별농가*가 계열사와 계약없이 자기 경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사에 판매하거나 산지 유통상인에 판매하는 형태가 있음
 - * 개별농가는 육계, 삼계, 토종닭, 종계 등을 사육

9)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① 고의 또는 과실을 모든 요건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무과실책임(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계열화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